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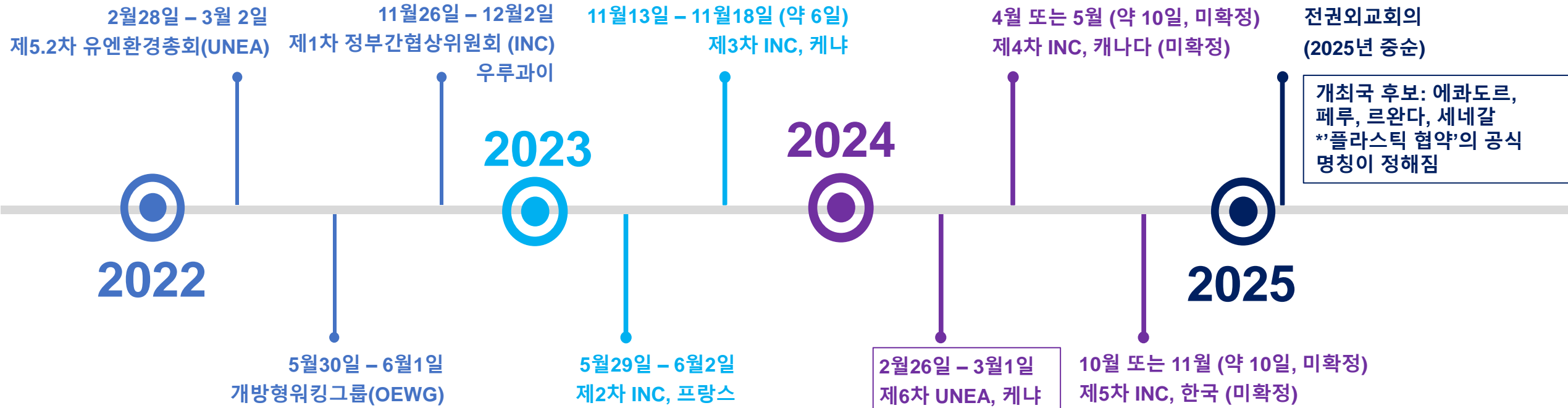
플라스틱 국제 협약 A to Z



이세미
BFFP, Global Policy Advisor

#breakfreefromplastic

플라스틱 협약: 타임라인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요지 및 결과

제1차 INC 요지

- ▶ 플라스틱 협약의 범위 그리고 목적에 대해 논의
- ▶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절차적 규정 및 투표 방식 잠정적으로 합의
- ▶ 대다수의 국가들이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 저감을 촉구하였으며 플라스틱의 전주기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국별행동계획 중심 및 자발적 조치에 의존하는 상향식 협약(예: 파리 협정)을 선호하는 반면, 군소도서개발도상국들은 뚜렷한 범 지구적인 조치가 있는 하향식 협약을 선호
- ▶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한 요소들은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로 미뤄짐

제1차 INC 이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니셔티브 출범

- 비공식 폐기물 수거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
-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도

정부와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함

- 69개국의 서면의견서가 제출됨
- 이를 취합한 문서가 UNEP/PP/INC.2/4

공통된 주제

- 플라스틱의 전주기가 인간 건강, 기후, 생물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해친다고 인지하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늘어남
-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생산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

제2차 INC에서 사용될 문서들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second-session-intergovernmental-negotiating-committee-develop-international/documents>

1

INC-2 에서 사용될 주요 작업 문서

- ◆ [UNEP/PP/INC.2/1/Add.1](#) (잠정 의제)
- ◆ [UNEP/PP/INC.2/2](#) (시나리오 노트)
- ◆ [UNEP/PP/INC.2/3](#) (절차 규칙 초안)
- ◆ [UNEP/PP/INC.2/4](#) (플라스틱 협약의 잠정적 요소)

2

INC-2에서 참고한 기타 관련 정보 문서

- ◆ [UNEP/PP/INC.2/INF/1](#) (결의안 5/14)
- ◆ [UNEP/PP/INC.2/INF/2](#) (의장단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출 절차)
- ◆ [UNEP/PP/INC.2/INF/3](#) (미래 INC의 날짜 및 장소)
- ◆ [UNEP/PP/INC.2/INF/4](#) (플라스틱 협약의 잠정적 요소에 대한 관련 추가 정보) (아직 미공개)
- ◆ [UNEP/PP/INC.2/INF/5](#) (플라스틱의 화학 물질 - 기술 보고서)
- ◆ [UNEP/PP/INC.2/INF/6](#) (생물 다양성의 지침 및 작업에 관한 협약)
- ◆ [UNEP/PP/INC.2/INF/7](#) (BRS 컨벤션 사무국 정보)



회의 목표

- ✓ 문서 UNEP/PP/INC.2/4를 기반으로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의 수립을 진행
- ✓ 제3차 INC에서 검토할 문서 준비 및 회기간 동안 수행할 기타 추가 작업을 포함하여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
- ✓ 효과적인 협상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조직적 사항을 결정

제2차 INC의 임시적인 시간표

PROVISIONAL STRUCTURE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INC ON PLASTIC POLLUTION								
	Monday 29 May 2023	Tuesday 30 May 2023	Wednesday 31 May 2023	Thursday 1 June 2023	Friday 2 June 2023			
9:00–10:00	Reg/pol group meetings		Reg/pol group meeting		Reg/pol group meetings		Reg/pol group meetings	
10:00–13:00	Agenda item 1: Opening of the session. - Opening statement from the Chair of INC. - Statement from host country - Statement from UNEP ED - Statement from INC ES	Contact group 1	Contact group 2	Contact group 1	Contact group 2	Contact group 1	Contact group 2	Plenary - Consideration of the reports of the contact groups and any outcomes from their work. - Consideration of outcomes of INC-2 and on further work, including considerations related to any elements of the future instrument not addressed at INC-2. - Discussions on Annex 1 of the Options Paper - Agenda item 3 (d) Dates and venues of subsequent sessions of the INC. - Agenda item 3 (e) Provisional agenda of the third session - Agenda item 5: Other matters - Agenda item 6: Adoption of the report of the session
	Agenda item 2: Election of officers							
	Agenda item 3: Organizational matters - Agenda item 3 (a): Adopt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 Agenda item 3 (b): Adoption of the agenda. - Agenda item 3 (c): Organization of work.							
13:00–15:00	Break Side events 1, 2 and 3	Break Side events 4, 5 and 6	Break Side events 7, 8 and 9	Break Side events 10, 11 and 12	Break			
15:00–18:00	Agenda item 4: Prepar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Contact group 1	Contact group 2	Contact group 1 <i>(As needed)</i>	Contact group 2 <i>(As needed)</i>	Contact group 1	Contact group 2	INC-2 Closing Plenary - Agenda item 7: Closure of the session
				Plenary <i>(As needed)</i>				
19:00 – 22:30	Host country reception	Potential Contact Group discussions		Potential Contact Group discussions		Potential Contact Group discussions		

UNEP/PP/INC.2/4: 플라스틱 협약의 잠정적 요소들 그리고 컨택그룹

UNEP/PP/INC.2/4 목차

UNEP/PP/INC.2/4

Annex

Potential options for elements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based on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addresses the full life cycle of plastics as called for by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resolution 5/14

Contents

I.	Introductory note prepared by the secretariat	3
II.	Potential options for elements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based on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addresses the full life cycle of plastics as called for by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resolution 5/14	4
A.	Objective(s)	4
B.	Core obligations, control measures and voluntary approaches (including annexes, if any)	4
1.	Possible core obligation: phasing out and/or reducing the supply of, demand for and use of primary plastic polymers	5
2.	Possible core obligation: banning, phasing out and/or reducing the use of problematic and avoidable plastic products	5
3.	Possible core obligation: banning, phasing out and/or reducing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use of chemicals and polymers of concern	6
4.	Possible core obligation: reducing microplastics	6
5.	Possible core obligation: strengthening waste management	7
6.	Possible core obligation: fostering design for circularity	9
7.	Possible core obligation: encouraging reduce, reuse and repair of plastic products and packaging	9
8.	Possible core obligation: promoting the use of safe, sustainable alternatives and substitutes	10
9.	Possible core obligation: eliminating the release and emission of plastics to water, soil and air	10
10.	Possible core obligation: addressing existing plastic pollution	11
11.	Possible core obligation: facilitating a just transition, including an inclusive transition of the informal waste sector	12
12.	Possible core obligation: protecting human health from the adverse effects of plastic pollution	12
C.	Means of implementation	13
1.	Financial assistance	13
2.	Capacity-building	15
3.	Technical assistance	15
4.	Technology transfer on mutually agreed terms	16
D.	Implementation measures	17
1.	National action plans	17
2.	National reporting	18
3.	Compliance	19
4.	Periodic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instrument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20
E.	Additional matters	21
1.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21
2.	Exchange of information	22
3.	Research	23
4.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24
5.	Stakeholder engagement	24
F.	List of potential annexes to the instrument	25
Appendix I:	Additional potential options for elements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submission template	26
Appendix II:	Background	32
Appendix III:	Paragraphs 3 and 4 of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resolution 5/14	36



컨택그룹의 논의 방향: (a) 향후 추구하는 협약의 결과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잠정적 요소 식별; (b)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오염의 범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격차 식별; (c) 조사 및 분석을 포함하여 제3차 INC 이전에 착수해야 할 추가 회기간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잠정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이러한 회기간 작업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식별

- 동시에 2개의 컨택그룹을 진행할 예정: 하나의 컨택그룹은 협약의 목표 그리고 잠정적 핵심 의무, 통제 조치 및 자발적 접근에 대해 논의. 다른 하나의 컨택그룹은 협약의 구현 수단, 시행 조치, 그리고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 논의
- 의장: 전문, 정의, 범위 및 원칙을 포함한 서문 요소와 관리 기구, 보조 기구, 과학 및 기술 협력 및 조정, 사무국을 포함한 제도적인 문제는 제2차 INC에서 다루지 않길 바램

UNEP/PP/INC.2/4: A. 잠정적 목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
플라스틱의 전주기 전반에 걸쳐 이의 악영향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



플라스틱 오염의 전주기 전반에 걸쳐 이의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000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환 플라스틱 경제 촉진을 포함하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및 배출을 줄입니다.

UNEP/PP/INC.2/4: B. 잠정적 핵심 의무 (B.1)



B. 1. 기본 플라스틱 폴리머(중합체)의 공급, 수요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 또는 감소

10(a) 가능한 목표:

- i. 주요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설정합니다.
- ii. 국별 공약 또는 목표 설정.

10(b) 기본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를 위한 옵션들 :

- i. 기본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에 대한 일시적인 중지 또는 새 플라스틱 폴리머의 제조, 수출 및 수입을 금지, 제한 또는 축소
- ii. 비차별적으로 당사국 및 비당사국에게 수입 및 수출 요건을 적용
- iii. 투명성 및 보고 요구 사항을 통해 제조, 수입 및 수출되는 플라스틱 폴리머, 전구체(precursors) 및 공급 원료의 유형 및 양과 생산에 적용되는 화학 물질의 양 및 유형을 추적
- iv. 새 플라스틱 또는 2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수립

10(c) 경제적 도구에 대한 옵션: 가격 기반 등 시장 기반 조치 설정

- i. 조치, 생산 허가, 면허, 재정적 인센티브 제거 및 새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의무 수수료, 관세 또는 세금 부여



B. 2. 문제적이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단계적 폐지 또는 사용 감소

- 11(a) 플라스틱 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원자재의 재고를 작성하고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
- 11(b) 불필요하거나 수명이 짧은 제품을 포함하여 문제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결정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
- 11(c) 특정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거래 및 사용을 식별된 날짜까지 금지, 단계적 폐지, 감소 또는 통제
- 11(d) 목록에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요건을 당사국 및 비당사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
- 11(e) 비차별적으로 당사자 및 비당사자에게 수입 및 수출 요건을 적용합니다.



B. 3. 우려되는 화학 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 금지, 단계적 폐지 또는 감소

12(a) 우려되는 화학 물질 및 폴리머 규제 옵션 :

- i. 우려되는 폴리머 및 화학 물질을 결정하기 위해 식별된 기준에 따라 특정 폴리머 및 우려되는 화학 물질 또는 화학 물질 그룹을 금지, 단계적 제거, 감소 또는 통제
- ii. 등록된 폴리머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요건을 당사국 및 비당사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
- iii. 비차별적으로 당사국 및 비당사국에게 수입 및 수출 요건을 적용

12(b)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 i. 공급망 전체의 플라스틱에 대한 공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생산에 적용되는 폴리머 및 화학 물질의 유형 및 양과 국가 법률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 사용 및 첨가제를 추적
- ii. 마킹(디지털 워터마크, 트레이서) 및 조화된 제품 라벨링, 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 제품 여권 및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투명성을 높임

12(c) 전환 가속화 및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요소들:

- i.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또는 녹색 화학 및 화학 단순화를 포함하여 대안 및 대체품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
- ii. 지속 가능한 첨가제 및 폴리머의 연구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



B. 4. 미세플라스틱 감소

13(a) 의도적 사용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들 :

- i. 특정 출처에서 환경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잠정적 방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 단계적 제거, 감소 또는 통제
- ii. 미세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거래 및 사용을 금지, 단계적으로 중단, 축소 또는 통제

13(b) 의도하지 않은 방출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들:

- i. 특정 제품의 생산, 취급, 운송 및 사용 시 플라스틱 펠렛의 누출 위험 최소화
- ii. 미세플라스틱이 수로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폐수 처리 메커니즘을 지원
- iii. 디자인, 세탁, 섬유, 타이어 및 도로 표시 산업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적 가용성 기술 및 최상의 환경 관행에 대한 지침 개발



B. 5. 폐기물 관리 강화

14(a) 폐기물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요소:

- i.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전개하고 육성
- ii.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분이 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 iii. 지침 개발 :
 - a. 폐기물 관리에 대한 투자 장려
 - b. 구현된 목표 및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정책입안자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 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샘플링, 분석,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 c.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하는 컨테이너, 장비 및 보관 장소에 대한 시방서 구축
- iv. 혁신을 위한 연구 촉진.

14(b)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를 위한 옵션 :

- i.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 및 수명 종료 관리를 규제하여 잘못 관리된 폐기물로 인한 누출을 줄임
- ii. 다음과 같은 위험한 관행을 금지: 노천 소각, 소각,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의 혼소 및 기타 폐기물 에너지화 공정, 시멘트 가마에서의 공동 처리 및 화학 물질 재활용.
- iii. 폐기물 재활용 관행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 및 도구 수립
- iv.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 분류 및 재활용에 대한 국가 지표 및 의무 설정.
- v. 생산자가 개별 폐기물 감소 목표를 포함하는 실행 계획을 준비하도록 요구

UNEP/PP/INC.2/4: B. 잠정적 핵심 의무 (B.5) 이어서

14(c) 플라스틱 쓰레기 불법투기 및 처리 관련 방안 :

- i.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거, 분류, 관리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
- ii.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통제 및 적절한 경우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에 의존
- iii.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대한 감시 시스템 및 할당량 설정.
- iv. 순환성을 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거나 통제
- v. 충분한 용량의 재활용 시설이 있는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위한 간소화된 허가 제도 개발
- vi.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통제 조치를 위한 시간표 적용.

14(d) EPR 촉진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옵션 :

- i. 가능한 경우 재활용 함량이 더 높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조달을 사용하는 등 2차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플라스틱 스크랩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
- ii. 특히 국내 차원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에 대한 지표 설정.
- iii.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장려하는 EPR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됨:
 1. 플라스틱 제조업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실행 계획 프로그램;
 2. EPR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지침.
- iv. 재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세금 면제 제공.
- v. 파리 협정(또는 지속 가능한 은행 및 투자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활용을 위한 최적 가용 기술을 확립합니다.
- vi. 폴리머 생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활용 시설의 양에 투자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



B. 6. 순환을 위한 디자인 육성

- 15(a) 가치 회복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장려, 강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순환성 기준 및 지침을 수립; 대량 생산 및 문제가 있는 제품 범주는 "시작 및 강화"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음.
- 15(b) 순환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요구 사항 도입.
- 15(c)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조화된 시스템 및 방법론을 기반으로 설계 기준에 대한 국가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 15(d)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에 대한 표시 방법을 설정합니다.
- 15(e) 시장에서 요구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재활용 함량에 대한 목표 설정.
- 15(f) 사무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 교환 등록소 구축.



B. 7.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의 감소, 재사용 및 수리 장려

16(a) 목표로 가능한 옵션: 플라스틱 제품의 감소, 재사용 및 수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

16(b) 플라스틱의 감소와 재사용을 규제하고 장려하기 위한 옵션:

- i. 감축 및 재사용을 위한 일반 및 부문별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관리 기구에 요청
- ii.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포함하여 용기 및 병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의 감소 및 재사용을 장려
- iii. 당사자들이 생산 부문별로 사용된 플라스틱 수거를 통해 재사용을 촉진할 것을 권장
- iv. 특정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을 포함하여 조화된 제품 디자인 표준, 인증 및 요구 사항을 적용
- v. 수수료, 관세 또는 세금 인센티브, EPR 제도, 보증금 환불 제도 및 제품 회수, 수리 권리 요구 사항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감소 및 재사용을 장려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



B. 8.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및 대체품의 사용 촉진

17(a) 연구 개발 향상을 위한 옵션 :

- i.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및 대체재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제공.
- ii. 대체 제품 및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도구(또는 재정 정책 인센티브)를 설정

17(b)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및 대체품을 검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 :

- i.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인증 체계 수립
- ii. 기술 검토 위원회(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기술 및 경제 평가 패널과 유사)에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기준과 안전한 대체품 및 대체품의 가용성을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기준을 설정.
- iii. 특히 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자연적인 대안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개발
- iv. 수수료, 관세, 세금, 보조금 및 거래 가능한 허가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도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용 감소 및 지속 가능한 대안 채택을 장려



B. 9. 플라스틱이 물, 토양 및 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 18(a) 플라스틱이 물, 토양 및 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줄이고 가능한 경우 제거(폐수, 산업 시설, 양식업, 농업 및 어업, 운송을 포함하여 일반 및 부문별 조치는 부록에 나열될 수 있음)
- 18(b) 플라스틱 전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고 제거하기 위해 환경 및 배출 또는 폐기물 기준을 포함한 최상의 사용 가능한 기술 및 최상의 환경 관행을 개발하고 사용
- 18(c)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로 인한 독성 배출물의 생성 및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한 관행을 금지
- 18(d) 플라스틱이 포함된 어구의 손실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국제해사기구를 포함한 기존 노력을 활용



B. 10. 현존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19(a) 현존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옵션 :

- i.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협정 초안을 고려하여 해양 환경 및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환경의 플라스틱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ii. 현존하는 폐기물 영역을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19(b) 부문별 또는 상황별 측정 옵션 :

- i. 유엔식량농업기구 및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하여 환경, 특히 해양 환경에서 유령어구의 오염 제거.
- ii.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정당한 해안, 강 및 하구, 도시 광업 및 규제되지 않은 매립지의 축적 장소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개선 활동을 수행.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긍정적인 지역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라스틱 오염 핫스팟 및 조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음.
- iii. 청소 활동이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상의 가용 기술 및 최상의 환경 관행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
 - a. 쓰레기의 양과 유형이 해양이나 기타 종 또는 서식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핫스팟에 대한 지표 식별;
 - b. 자발적인 기반(예: 청소 활동 및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에 따라 국가 행동 계획(NAP)에서 특정 제거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장)



B. 11. 비공식 폐기물 부문의 포용적 전환을 포함하여 정의로운 전환 촉진

- 20(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산업 및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공식 폐기물 수거자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롭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
- 20(b) 관련이 있는 경우 민간 폐기물 관리 회사가 비공식 폐기물 수거가 협동조합 또는 협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공식화를 위한 점진적 계획을 수립. 이러한 협동조합 또는 협회가 공식화됨에 따라 기업이 폐기물 수거 협동조합 또는 협회에서 수거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공식적인 요구 사항에 맞추어야 함
- 20(c) 건강 관리, 교육 및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접근과 같은 비공식적인 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법적 인정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폐기물 수거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
- 20(d) 비공식 폐기물 부문을 플라스틱 가치 사슬에 통합하고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순환 경제를 촉진
- 20(e) 비공식 폐기물 수거자가 폐기물 수거 및 분류 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기술 및 관리 기술 업그레이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EPR 제도에서 파생된 수수료를 사용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



B. 12. 플라스틱 오염의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

21(a) 위험 평가 및 평가 옵션 :

- i.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평가.
- ii.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 수행.

21(b) 협력에 대한 옵션 :

- i.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및 기타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 협업 및 정보 교환 촉진.
- ii. One Health (인간, 동물,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접근 방식 개선.

UNEP/PP/INC.2/4: C. 협약의 구현 수단, D. 시행 조치, 그리고 E. 기타 추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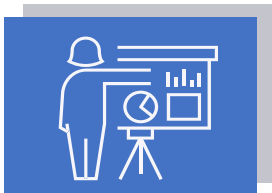
C. 협약의 구현 수단

- ▶ 전용 플라스틱 다자간 펀드 구축
- ▶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현존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기금
- ▶ 혁신적인 기타 자금 조달 기회 탐색
- ▶ 역량강화, 기술지원, 기술이전



D. 시행 조치

- ▶ 모든 당사국이 보고해야 하는 국가 보고 프레임워크 구축
- ▶ 식별해야 하는 보고 사항의 핵심 요소 식별
- ▶ 플라스틱 협약의 효율성 평가와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E. 기타 추가 사항

- ▶ 인식 제고 및 교육
- ▶ 정보 공유
- ▶ 연구
- ▶ 이해관계자 참여



감사합니다